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 현 찬 의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□ 근로기준법상 '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'가 시행됨('19.7.16.)에 따라 조직문화를 혁신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,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신고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자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(노동정책담당관-9217, 2019.7.31.)을 안내하였고, 이는 적용범위를 볼 때,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므로 「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□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「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직장 내 업무 배제, 집단 따돌림 및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.
- □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장 「제16 조의3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시장 또는 공무원은 직장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 배제, 집단 따돌림 및 신체적·정 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」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- 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
 막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